

2024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안내

1. 관련 근거

- 가.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(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) 제3항 관련 (별표 1)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제4호
- 나.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

2. 실습대상: 다음 '가'와 '나'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(휴학생 포함)

- 가. 양성 과정생 또는 재교육과정생 중 부전공 취득 과정생
 - 나.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이 2회 미만인 사람
- ※ 개인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횟수 확인 방법: 붙임 참조

3. 이수기준

- 가. 실습 인정 기간 및 횟수: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2회 이상
- 나. 실습기준
 - 1) 본교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
 - 2) 교원(기간제교사 포함), 산학겸임교사, 강사, 직원 등이 소속 학교(교육청 및 교육청 소속기관 포함)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(실습)(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관련)
 - ※ 소속학교(기관) 내부결재 문서
 - ①시행계획, ②참석명부 포함된 시행결과, ③②항의 서류가 없을 경우 이수증(또는 이수 확인서) 제출(시행계획, 시행결과, 참석명부)제출(업로드)
 - ※ 외부교육실습 인정은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이수증만 인정
(예시: 2024년 3월 1일 입학한 교육대학원생은 2024년 3월 1일 이후 교육받은 이수증 제출 인정)

4. 실습 신청 및 소속학교 이수증 제출

가. 메뉴: 학생기본 → **교직원정보** → **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신청**

나. 실습 신청

- **차수***는 1차, **프로그램명***은 아래 구분을 참고하여 선택, **신청** 을 클릭하면 완료
- 다. 소속학교(기관)에서 실시한 응급처치 교육 이수증(내부결재 문서) 업로드
- **차수***는 1차, **프로그램명***은 아래 구분을 참고하여 선택, **신청** 을 클릭하고, **첨부파일** 을 클릭하여 이수증을 업로드하고 **첨부파일 저장** 을 클릭하면 완료
- 다.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 및 이수증 제출 기한: **2024. 9. 9(월) ~ 12. 8.(일)**

2024년 9월

교육대학원장